

제416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7월16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간사 선임의 건
-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o 간사(유상범) 인사	4
2.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8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8

(13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 선임의 건과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논의한 후 오는 26일 개최되는 청문회와 관련하여 증인 등의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성심껏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공식 문서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국회의원과 언론을 봉쇄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고 대통령실은 국회 공문서를 땅바닥에 내다 버리는 있을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회에 출석하면 안 되는, 국민 앞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상 자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채 상병 특검안 입법청문회에서도 정당한 출석 사유, 다시 말해 신원식 국방부장관 같은 경우 해외 출장이 있어 그 부분은 위원장이 정당한 불출석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그것은 허가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이나 예를 들면 불가피하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거나 등의 정당한 불출석사유서를 필요하다면 불출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증감법에 따라 즉시 고발되고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4시03분)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대통령실 앞에서 있었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 아닙니까.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어요.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 하시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권을 주지 않았어요.

○송석준 위원 공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하셔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민주당 위원들의 불법행위를 갖고서 여기서 두둔하는 발언을 위원장님이 하시면 국민들이 헛갈리시잖아요. 마치 그것이 정당한 행위고 적법행위로 아시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송석준 위원 발언권을 달라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겁니다.

○박준태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을 협의할 간사를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박준태 위원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요청했는데 왜 발언권 안 줍니까?

○위원장 정청래 지난 6월 12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선임한 데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발언권 주세요!

○서영교 위원 진행을 하고 요청을 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발언권만 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회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유상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혼자 상임위 운영합니까? 위원장이 뭔데 발언권을 그렇게 함부로 잘라요?

○위원장 정청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의가 있으면 찬반 표결을 해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상범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1항이 지금까지 난항을 거듭했던 간사 선임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로 정식 선임한 이후에 간사님 인사 말씀이 있어요. 이것부터 하고 뭘 하더라도 해야지요. 뭐 이렇게 급합니까? 다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위원장이 말할 때는 좀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일리가 있네요.

○유상범 위원 그동안 일방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굉장히……

○김승원 위원 다 국회법에 따라서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자, 들어 보세요. 양쪽 다 들어 보세요.

이런 것은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냥 나오겠습니까, 그게?

○위원장 정청래 들어 보세요.

지금 간사 선임이 안 돼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많이 비판하시고. 그래서 이것부터 빨리 하려고…… 지난번에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들어오시면 그냥 처리해도 되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나가니까 지난번에 벌써 처리해야 될 안건을 못 처리하고 오늘도 하는데 오늘도 의사진행발언이라는 미명하에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간사 선임을 못 하게.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사봉 세 번 두드렸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로 선임되신 유상범 위원님께 축하드리며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유상범) 인사

(14시06분)

○**유상범 위원**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간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강행규정입니다, 또 의무규정이고. 그것에 따라서 49조 2항에서 위원장은 의사일정과 회의 날짜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의무규정화하고 있습니다.

참 뒤늦게 간사 선임이 됐습니다. 저희가 간사 선임 절차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결코 부당한 요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들께서 오늘 이 의사진행 절차 지켜보시면서 간사 선임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위원들이 위원장님의 법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불신 또는 일방적 운영에 대한 신뢰가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께서 이와 같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는 가능하다면 야당 간사와 협의한 것을 일방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사위 운영에 협의라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함께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을 발의할 권한도 없고 법사위도 대통령의 탄핵 발의할 권리도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중요 안건의 심사라는 명목으로 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 안건의……

○**김승원 위원** 인사말씀만 하시지요.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발언시간 제한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중요 안건의 심사……

○**장경태 위원**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까, 저희가?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잠깐만요.

○**장경태 위원** 간사 선임하고 관계가 없는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유상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잠깐만.

저기요.

○**장경태 위원** 청문회에 대한 의사진행을 왜 합니까. 왜 듣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장 정청래** 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인사말 길게 할 수도 있지요.

○**장경태 위원** 인사말이 아니잖아요!

○**곽규택 위원** 인사말씀 들어 보세요.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이것 제재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위원이나 민주당 위원이나 상대방 위원이 말씀하실 때는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사님 인사말씀하고 있는 중이고 끼어들지 마세요.

계속 발언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국회나 법사위나 탄핵소추 발의의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중요 안건을 심사한다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법률안 개정안과 같이 법사위에서 대안 발의라는 형태로 국회법 51조에 의해서 법률안에 대해서는 발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 개정과 관련된 청원의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안 발의와 관련된 부분은 법사위에서 심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사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국회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결의한 경우에 한해서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채 상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군 내에서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 관할권을 줌으로써 군사경찰에게 수사권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채 상병과 관련된 군사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건 권한 없는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수사권이 없는 자가 수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탄핵안 발의와 관련돼서는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이것을 심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즉 심사할 권리가 없는 자가 법사위의 탄핵안 발의를 심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회법 125조에 따라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관련자의 진술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처리할 방안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102조에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인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102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고.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들어 보세요.

○**위원장 정청래** 들어 보시고요. 유상범……

○**박지원 위원** 그렇게 항상 존중해요.

○**송석준 위원** 얼마나 잘해요, 지금.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님,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맙시다.

이것에 대해서 유상범 간사님도 좀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탄핵안 실시계획안을 하면서 위원장께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대체토론을 중단시키고 이것을 표결에 부칠 때 108조의 조항을 적용하셨습니다. ‘108조 규정에 따라서 나는 처리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8조의 1항은 토론이 종결됐을 때 종결을 선언하는 겁니다. 2항의 경우에는 토론이 종결되지는 않았으나 예정된 토론 외 많이, 약속과 달리 진행이 되거나 해서 의사진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동의에 의해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의 단서조항에 보면 토론에 참여한 사람은 동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마치 제의에 의해서도 종결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만 108조 규정에는 제의해서 종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께서는 전현희 위원 등의 찬성에 의해서 토론을 종결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현희 위원은 당시에 이미 토론에 참석한 분입니다. 그 외에도 서영교 위원도 계시고 이건태 위원, 박은정 위원이 계셨습니다. 즉 이분들은 동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날 그 결정은 동의할 수 없는 자들이 동의를 해서 대체토론을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종결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동의 또한 부적합한 동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늘 법대로를 말씀하시니 필요하시다면 한번 간사 간 협의나 법률적 절차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인사말씀 시간을 드렸는데 인사말씀과는 좀 달리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관한 컴플레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회법 108조를 살펴보시면 교섭단체별로 1명 이상 토론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토론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토론할 때도 무한정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항상 거수로 토론 종결 표결을 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탄핵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청원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원 심사 내용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를 9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법에 보면 세 가지 조항은 청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재판에 간접하는 경우, 국가기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국가를 모독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100만이 아니라 200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청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사무처에서 이 부분은 세 가지 부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5만 명이 달성됐기 때문에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 상태입니다. 제가 회부시킨 게 아닙니다. 따지려면 국회사무처에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원이 들어오면 청원소위로 보내서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전체회의에서 할 수도 있고 이건 위원장 재량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청원소위로 보내기 전에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본회의에서 토론한 것이고. 또 대통령 탄핵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 중요한 안건,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증인을 채택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65조 1항에 의해서 청문회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진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것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제안되고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조사 권한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엉뚱한 트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청원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원 심사 내용이 하필이면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하신 말씀에 잘못……

○**위원장 정청래**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국회법 49조에는 간사 간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되어 있고요. 간사 간 합의가 아닙니다. 협의입니다.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상임위는 열 수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법은 비교적 안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52조 2호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언제든지 개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간사 간 협의가 안 되더라도 국회법 52조 2호에 따라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언제든지 회의는 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발언권을 이런 식으로 안 주기 시작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했고 그리고 가처분신청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원 간사,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승원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허가받은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신 유상범 간사님께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인사말씀을 하시는 자리인데 갑자기 토론 형식의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국회법 102조 위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점은 한번 깊이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사 선임이 강행규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22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정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지금 세 번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는 동안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이십니다. 아마 21대나 그 전의 관례, 관행에 비추어서 으레 출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22대 국회는 정시에 출발을 했고 국회법에 따라서 출석하지 아니한 여당을 빼 놓고 야당 간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네 번째부터 출석한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려고 안전으로도 많이 상정을 했는데 그것을 한두 번 간사를 선임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의 퇴장에 대한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론 종결을 할 때, 물론 토론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토론하지 않은 저도 있었고 다른 분들도 그 표결에 참여를 해서 다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에 따라서 토론 종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법 어긋나는 것 아니고요.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108조는요 각자 살펴보시고요.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제가 요청을 했고 동의하는 사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따져 보세요.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적절치 않습니다. 따져 보는 게 아니라 그 절차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몇 분이나 동의했습니까?

2.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14시20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좀 합시다.

○곽규택 위원 누구 마음대로 그걸 결정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 재량입니다.

○유상범 위원 재량은 마음대로가 아니지요.

○위원장 정청래 이 안건은 지난 6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구성된 소위원회 정수 위원 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방금 전 국민의힘 간사님이 선임된 관계로 소위원회 위원 정수 등에 대하여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이 안건은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오늘은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신속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간사 선임의 안건이 상정됐을 때 불출석하셨고 또 그것을 상정해서 처리하려고 했을 때 또 퇴장하셨고 그래서 오늘에서야 간사 선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상정된 안건들이 제때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조국혁신당 위원님들께서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잡히고 안건이 처리되기를 위원장으로서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그것이 되지 않고 법사위가 식물위원회 아니냐,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법 52조 2호에 따라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또 법사위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4시22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9일 채택된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2024년 7월 26일에 실시되는 2차 청문회에 필요한 추가적인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 등의 구체적 명단 등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등의 명단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 먼저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기회 좀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 내려 보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한꺼번에 여러 분이 손 들면 누구를 시켜야 될지 그것이…… 그러니까 먼저 든 위원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하는데 제가 또 지난번에도 많이 제지를 받고 그래서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장님 발언하시는데 시작하시면서 지난번 민주당 위원님들이 대통령실을 찾아서 이 문서를 송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마치 그걸 적법하게 전달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내팽개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법 문구를 곱곰이 다 따져 보십시오. 명백하게 이번 탄핵에 관한 청원은 기본적으로 청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청원이 들어와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또 회부돼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적격성을 가져야 되는데 적격성도 안 돼요. 그게 중요한 안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안건이면, ‘왜 중요하나? 탄핵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상임위의 청원 안건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반증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말도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그 탄핵안에 대해서 청원 형태로 들어온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도 지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그 당시 우리 당, 우리 법사위원장 시절에 그게 청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뤄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게 성격상 탄핵에 관한 내용이 청원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왔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적법한 이런 청원인 양, 대상도 아닌 그것을 갖다가 적법하게 전달하겠다고 왔다가……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안 했겠어요? 분명히 이것 불법적인 서류 전달이니까 거부했을 뿐인데 그것을 억지로, 마치 거부를 고의적으로 하고 폭력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발 좀, 우리 국회가 민생이 산적한 이 엄중한 시기에 제발 좀 그런 불필요한 행위로 국민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오늘 논의하고 또 안건 조금 이따 대체토론도 하겠지만 제발 좀 이제, 오늘 모두에 있었던 것 같이 모범적인 모습을 위원장님께서 좀 많이 조성해 주시고 정상화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에 관한 건데 위원장 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박 밭에서 벌어진 일을 호박 밭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거는요 국회 청원이 아닙니다. 청와대 게시판 청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청와대에서도,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와대의 소관이 아니라 국회의 소관이다 그래서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을 국회에 했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송석준 위원** 당시에 또 국회에도 왔지요. 요건이 됐어요, 5만 이상.

○박규택 위원 국회에도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회에 왔어요.

○위원장 정청래 146만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국회의 청원이 아니라 청와대 청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도 만약에 왔다면,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왔다면 청원을 안 한 그분들의 책임이지요. 직무유기입니다. 국회법에……

○송석준 위원 직무유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해석이지요. 지금이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제가 지금 송석준 위원님과 일문일답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답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국회법 125조 5항에 보면 청원이 들어오면 90일 이내에 심사·보고해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요 계속 이것은 청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청원의 대상에 돼서 이미 접수가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판에 간접하는 내용, 국가기밀, 국가 모독, 이 세 건은 청원이 성립 안 합니다. 지금 140만 넘게 한 이 청원은 그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자동 접수돼서 법사위에 지금 와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한 겁니다. 정청래 법사위원회장이 그 청원을 국회 법사위에 접수하지 않았어요. 자동 접수가 된 겁니다. 자동 접수된 기계를 탓하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청원소위로 보낼 거냐, 전체회의에서 토론할 거냐, 청문회 할 거냐 이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요, 자동으로 접수됐다고.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계속 소용없는 그런 토론은, 의사진행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택 위원님.

○박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대통령실에서 왜 증인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게 의사진행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박규택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은 저를 보고 해 주세요.

○박규택 위원 예.

아마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잘못이 있을지언정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인들 출석을 방해해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에게는 이미 많은 위법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 계속 진상규명을 방해를 한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상식의 증거라는 것으로 판단해 보면 대통령은 무리한 방법으로 이미 수사 외압을 가했고 그것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증인 출석 방해 행태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회증감법상의 위법행위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비서실장 등 하급자가 그 행위를 저질렀는데 대통령이 직무상의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둔다고 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행위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정청탁 방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와 반환의무를 이미 위반을 했습니다. 검찰이 부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인사상의 권한을 남용했는가,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미 부정청탁금지법을 방해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탄원 청원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또 있습니다. 방통위법, 분명히 거기에서 방통위원회 결원 시에 자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 달 안에 임명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도 반년 지나도록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에게 이미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위법 사실은 분명히 존재 한다는 점, 이걸 좀 한번 여당 위원님들과 대통령실에 경고를 주고 탄핵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추가되지 않도록, 위법행위가 추가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셔서 국힘 위원님들도 착오에 의한 잘못, 더 죄를 키우지 않도록 분명한 경고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송석준 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정말.

○**위원장 정청래** 상습적으로 끼어들기 하는 송석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쪽 다 똑같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제가 의결 한번 제안합니다. 서로 끼어들지 않기로 우리 한번 합의합시다.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박군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국회에 청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들어왔는가? 들어왔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10만 명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탄핵청원소위원을 안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누구냐? 국민의힘 측의 여상규 위원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이것을, 그러면 청원은 심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건 125조, 청원이 자동적으로 회부되면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의무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자꾸 말씀하시기 전에 20대 국회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탓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한테 그 얘기를 계속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회 청원이 아니라 청와대 게시판에 146만 명이 된 거고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이것은 우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국회의 소관 사항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지요? 국회 청원을 왜 안 했느냐, 귀 당의 법사위원장께서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한테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박군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처럼 이것이 청원의 조건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밀을 노출하거나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회부됐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은 충분하게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찬반토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반토론 결과에 의해서, 법사위원들이 1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법사위에서는 찬반토론을 하고 그 찬반토론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면 우리 임무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탄핵소추를 제안할 권한이 없어요. 그 대통령 탄핵은 본회의장에서 150명 이상으로 발의되고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청원 심사를 하는데 하필이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안건이냐 그래서 국회법 65조 1항에 의해서 청문회를 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진행된 거 가지고 왜 이것이 진행됐느냐라고 따져 봤자 버스 지난 다음에 손 드는 일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버스가 출발이 잘못돼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너무 강조해서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님은 민주적으로 의사진행발언하려면 본인은 했기 때문에 손 들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송석준 위원** 그래도 해야 될 얘기는 해야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여야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시켜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지난 12일 법사위 야당 위원님들이 대통령실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탄핵 청원에 따른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를 적법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 전에 법사위 행정실에서 출석요구서를 수차례 전달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 대리 수령을 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그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사정부 시절에도 국회의원을 그렇게 무도하게 길거리에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막는 일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공용서류인 출석요구서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청원에 대한 청문회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국회의원들이 직접 전달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수령을 회피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이것은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그리고 출석요구서를 손상한 것은 형법상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증인들은 출석을 회피한다면 그것조차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당시에 야당 법사위원들이 마치 불법적인 출석요구서 전달 행위를 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 위원들께 그 부분을 경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은 저를 존경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렇게 불인 거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 내려 주시고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이 실제로 찬반토론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중인 채택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절차상 대체토론이 필요하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손 든 곽규택 위원님 3분간 토론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토론을 3분을 주시는 게 어디 있어요? 대체토론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15분 이내에서 정하고 7분을 주셔야지요. 대체토론이 3분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정철래** 양쪽 간사 나오세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양당 간사 간 합의가 됐습니다. 5분씩 하시고 몇 명을 할 건가는 지금 간사들이 나가서 협의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곽규택 위원님 먼저 5분 하시고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요 적절한 시기에 박은정 조국혁신당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규택 위원님 5분간 토론해 주세요.

잠깐만, 토론하기 전에, 진짜 지금부터는 토론하기 때문에 상대방 발언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고 끼어들기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하시지요.

○**곽규택 위원**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던 것은 상임위원회장님의 의사진행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또 내용적으로도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묵살이 됐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시작한 이래로 참 의문이 드는 사항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말하는 기회를 좀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문입니다.

지난번 무제한토론 때도 국회법에도 없는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토론 종결 또 상임위에 오면 상임위원장의 일방적인 발언 기회 박탈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발언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요.

또 두 번째, 법사위 상임위원장에게 과연 헌법과 법률을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지금 상임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헌법상의 탄핵소추,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 65조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어야 발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발의를 거쳐서 탄핵조사가 법사위에서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헌법적인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를 않고 청원을 가지고, 청원 내용도 탄핵 발의 청원입니다. 탄핵 발의 청원을 가지고 헌법상에 규정된 그런 절차를 무시한 채 탄핵조사와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드는 게 ‘중요 안건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중요 안건인지 아닌지를 상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요 안건인지 아닌지는 법사위에 있는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탄핵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탄핵 발의를 해 달라고 하는 청원입니다. 그 청원 내용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사위에 없는데, 법사위에서 분명히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것은 금방 상임위원장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 안건이다, 안건이 될 수도 없고 중요한 안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청문회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중요한 안건이라는 것에 대한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하에 하는 불법 청문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청원이 접수된 것을 기계가 하는데 상임위원장은 탓하지 마라, 이게 정말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습니다. 기계에서 접수를 했다고 해 가지고 국회법, 청원법 또 국회청원심사규칙 등에 접수될 수 없는 청원에 대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가 잘못된 거지요. 그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상임위원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청문회에 대해서 이런 아무런 근거가 없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했고 접수될 수도 없는 청원에 대해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불법적인 탈법적인 헌법질서에 위반된 청문회를 하면서 그 청문회에 중인 채택을 하고 소환장을 송달받아라?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수용해라? 그런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진심으로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번에 대통령실에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인 송달서를 가지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입구에서부터 경찰관 또 경호처 직원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희들을 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왜 불법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회법에 의하면 적법하게 접수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이 접수가 되었고 또 이는 당연히 법사위에서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 법사위원회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요 안건으로 청문회를 소집을 하고 청문회에 관한 중인을 적법하게 우리 법사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송달을 해야 되는데 송달을 거부해서 위원들이 직접 송달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이 입구에서 조차 위원들과 기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방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취재 방해이고 언론 탄압이고 또 우리 위원들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또 송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간 송달서류를 바로 땅바닥에 내팽개친 것은 공용서류손상죄고 이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당시에 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직접 들어가서 이걸 전달을 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입구에서 이것을 막고는 들여보내지 않으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과 경찰들이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진입하겠다 하는데 진입을 막는 그런 과정에서 기자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요. 저도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니다. 심각한 그런 찰과상 그리고 또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았습니다.

지금 대명천지에 민주국가에서 국회의원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서류 전달하겠다는데 이것을 경찰을 동원해서 입구에서부터 막는 것이 이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실에서 적어도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나와서 국회 의원들을 맞아 주고 대화를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폭행으로 맞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졌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대통령실의 중인들을 소환을 송달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은 법 앞에 군림하는 것입니까 법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느 국민들이 공무집행을 하는 그런 송달 공무원들을 현장에서 경찰들을 동원해서 이런 것을 폭력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이런 행위를 자행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에 대해서 추가로 오늘 중인 채택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국회의 법사위에,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진상을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국민들에게 해 주시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한 만큼 거기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북 앞에 붙여 놓은 것은 좀 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이것 사과를 받고 유감 받아야 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위원장 정청래 충분하게 어필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거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똑같이 이런 부분을 적용하도록 할 테니 지금 위원장의 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물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유상범 위원 과거에도 이렇게 해서 잠깐 붙이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떼어 냈습니다.

○박군택 위원 간사님, 폭력을 저지른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한 말씀 해 주실 생각이 없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자, 박군택 위원님도……

○유상범 위원 그것 떼기나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여러 위원님들, 발언을 임의적으로 하시는 건 자제해 주시고요. 그것은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지금 양당이 오고 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양당이 오가면서 해야지 순서가 좀……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정청래** 오고 가고 했잖아요, 지금. 그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곽규택 위원** 아니, 거의 야당이잖아요.

○**송석준 위원** 전현희 위원이 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일단 박은정 위원님 손 드셨기 때문에 토론하세요.

○**박은정 위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추가로 증인 신청된 증인들 중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소환하겠다는 검토만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청을 검토청으로 바꾸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추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4년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항소심, 공범들의 재판이 끝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 직무유기에 가까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는 세상에 알선수재로 조국혁신당에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품백은 어디에 있는지 압수수색을 해야 함에도 공문으로 달라는 요청을 간절하게 하고 있는 정말 한심하고도……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검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의구 대통령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 당시에 부속실에 근무했습니다. 당시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위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옆에서 보좌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웠는데 지금 우리 탄핵 청문회 관련에서도 강의구 부속실장을 반드시 불러서 대통령실의 위법행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위법한 직무수행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 탄핵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반드시 중요한 증인으로 소환을, 출석 요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의 대통령실 출석요구서 전달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해서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국회 법사위에서 적법하게 의결을 해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해서 이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청문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공부하여 가지고 이 청문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고 이 청문회는 반드시 대통령 탄핵을 할의할 정도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국회의장께 보고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이 청문회가 순조롭게,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

지금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하는데 실제로 위원님들이 오늘 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누구를 증인을 추가한다는 거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이분들을 증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걸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안건이 이미 3항으로 성립했는데요. 저희가 증인을 추가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26일 김건희 관련 청문회 관련해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직무대행, 이원석 검찰총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이 여섯 명에 대해서 26일 날 청문회에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분을 증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내용이 실제로 토론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건 토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누가 하시겠습니까?

주진우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 주진우 위원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탄핵소추 관련 조사 절차는 우리 헌법상 함부로 개시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만 조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정말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서 당당히 탄핵소추 요건을 맞춰서 과반수 의결을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장짜리 청원서가 접수됐다라고 해서 중요 안건이라는 사유를 붙여서 청문회를 막 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핵 조사 절차가 함부로 개시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익은 물론이고 국민들께도, 늘 민생을 다루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일단 조사부터 해 보자라고 한다 그러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중요 안건이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결국은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중요 안건이면 대체토론을 왜 그렇게 제한하는 것입니까? 중요 안건일수록 대체토론을 더 자세히 해야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권은 최소한으로, 아주 한두 명밖에 발언 못 하도록 제한하면서 이게 중요 안건이라고 하면 국민 여러분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발언 중에서 보면 이게 방송법을 대통령이 위반해서 탄핵 사유가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민주당 위원님들 주장에 따르면 청원서를 심사하기 위한 조사 절차라고 말씀하시지요. 청원서에는 어디에도 방송법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법을 언급해 가면서 이것도 위법이니 저것도 위법이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의견이 완전히 다른 사안을 가지고 탄핵 사유라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탄핵 절차를 우회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청원서가 들어오면 사안만 중대하면 무조건 심사해야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만약에 들어와서 요건을 넘겼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도 중요 안건이기 때문에 심사합니까?

그것은 야당 대표는 의전서열도 굉장히 높고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고 국정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박은정 위원** 위원장님, 지금 증인과 관련한 대체토론이 아닙니다. 증인과 관련한 대체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 중단해야 됩니다.

○**주진우 위원** 발언을……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시고 타이머 꺼 주세요.

○**박은정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도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하시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위원이 발언하고 있을 때는 좀 참으세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도 좋고 뭐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여야 불문하고 위원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데 끼어들기 하시는 분들 경고합니다. 145조 2항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할 때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주진우 위원 발언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아까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 제명 청원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박은정 위원** 증인과 관련한 대체토론이 아닙니다.

○**송석준 위원** 너무 방해하지 마세요.

○**주진우 위원** 아니, 제가 발언을 좀 하게 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 증인과 관련한 대체토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그러니까 그 발언도 끝나고 하세요.

○**주진우 위원** 증인과 관련된 대체토론 내용이 맞습니다. 그게 왜 아닙니까?

○**위원장 정청래** 끝나고 하세요.

○**서영교 위원** 지적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예.

○**박은정 위원** 지금 문제된 여섯 명에 대한 증인에 대한 대체토론이 아닙니다.

○**주진우 위원** 듣고 말씀하시지요.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으로서 발언 중간에 제가 발언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재량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재량이 없어요.

○**박은정 위원** 발언 중단을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위원장이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발언하세요.

제가 주진우 위원 발언에 찬성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회의 진행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조해 주세요.

발언하세요.

○주진우 위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왔을 때 다 따져 보겠지요. 법인카드 유용에 관련된 증거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사유가 국회 의원 제명 사유가 되는지 이런 등을 다 따져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과 관련된 청원 관련해서는 그것을 하나도 따져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부터 열겠다고 하는 겁니다.

보면 안건이 아까 법사위에 계류됐기 때문에 무조건 청원 대상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법사위에 계류된 것은 청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기서 따져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나 법사위가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은 기본적으로 청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시로 들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에 대해서도 청원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소위 심사도 하지 않고 종결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유들을 보면요 지금 순직 해병대원 사건 현재 수사 중일 뿐만 아니라 박정훈 수사단장이 1주일 만에 1000쪽도 안 되는 조사 결과 가지고 8명 입건했는데 얼마 전에 1년여 만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가 완전히 박정훈 수사 단장 결론하고 달랐지요.

국방부장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걸 지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가정해서 조사부터 하고 본다는 것은 이것은 탄핵소추 절차를 엄격히 하라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중인으로 신청된 사람들 보면, 여기 버젓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청원하다 보니까 그것을 법리적인 것 잘 몰라서 그렇게 신청을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중인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법과 헌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 토론 내용 중에 또 위원장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입이 아픕니다.

이미 이 청원은 청원으로 성립이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밀,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 이 세 가지는 청원이 성립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즉각 발의 요청 이것은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아서 법사위에 자동으로 회부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서 청문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고자 중인 채택까지 됐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인정 못 하겠다 그러면 토론에 참여하면 안 돼요. 나는 원초적으로 이 청원은 청원이 아니다,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토론도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해서 퇴장하셔야 되는 거야. 앉아서 토론하면서 이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본인 말이 본인 말에 의해서 탄핵되는 거예요. 자기 모순이에요.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에게 위원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실 거라면 저한테도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곽규택 위원** 누구 마음대로 토론에 참가하고 안 참가할지를 정합니까, 그거를?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김승원 위원** 발언권 얻으세요.

○**유상범 위원** 발언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이미 절차가 진행돼서 토론하고 있으니 그 이전에 이것이 청원으로 성립하느냐 마느냐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오늘 안건은 지금 6명 추가 증인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나 이 토론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요.

○**유상범 위원** 지금 반대토론을 했잖아요.

○**주진우 위원** 청원이 안 되면 증인 신청도 무효지요.

○**유상범 위원** 주진우 위원이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가급적, 제가 이렇게 말씀…… 가급적 증인 정진석, 홍철호, 송창진, 이원석, 강의구, 이동혁, 이 추가 증인 채택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잖아요. 아셨습니까?

○**송석준 위원** 제가 그 토론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박지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발언권을 얻으십시오.

○**송석준 위원**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발언권을 얻으세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혼자 회의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박지원 위원** 의사진행이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토론해 주세요.

○**박지원 위원** 토론이요.

우리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도 또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모두가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국회에 가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국회 퇴장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나라 잘살게 하고 또 지역구 발전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을 겁니다.

지금 누차 얘기를 했지마는 국회에 탄핵 청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5만 이상이 넘어서 사무처에서 법사위에 보냈고 현재는 거의 140만이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청원도 5만이 넘어서 우리 법사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청원은 왜 안 했느냐, 왜 탄핵 발의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것은 청와대에 접수된 거고 또 국회에 접수가 됐다 하더라도 당시 국민의힘 전신 법사위원장이 회부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단군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우리한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하는 것보다는 법사

위에서 그 의견을 본회의에 낼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으로서 할 일을 다 하자. 그래서 저는 제 토론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국회 운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송석준 위원** 찬반토론 기회를 주시지요.
- 유상범 위원** 그거 하려고 나갔다 오셨어요, 박지원 위원님?
- 박준태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토론 종결은 토론에 참가하지 않은 분이……
- 박지원 위원** 나서지 마!
- 유상범 위원** 뭘 나서지 말아요? 왜 반말이에요!
- 곽규택 위원**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 김승원 위원**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 박지원 위원** 내가 발언하는데 왜 나서!
- 곽규택 위원** 가만있는 사람한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해 주세요.
- 곽규택 위원** 아니, 지금 누구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님!
- 서영교 위원** 나서지 말라고요!
- 김승원 위원** 조용히 하세요.
- 곽규택 위원** 아니,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 서영교 위원** 유상범 위원한테 했는데 왜 옆에서 끼어들어!
- 곽규택 위원** 저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박지원 위원** 아니에요. 서로 안경 썼으니까 잘못 본 거예요.
- 김승원 위원** 왜 혼자 그러세요? 혼자 왜 자가발전 하세요?
- 위원장 정청래** 오인이에요, 오인.
- 박지원 위원** 유상범 위원한테 한 거예요.
- 곽규택 위원** 사과하세요!
- 박지원 위원** 안 했다니까, 당신한테.
- 김승원 위원** 뭘 사과를 해요?
- 서영교 위원** 곽규택 위원이 아닌데……
- 곽규택 위원** 저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해 주세요.
- 박지원 위원** 누구한테요?
- 곽규택 위원** 저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박지원 위원** 아니라니까요.
- 곽규택 위원** 누구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해 주세요!
- 박지원 위원** 유상범 간사가 얘기를 해서……
- 곽규택 위원** 그런데 눈은 왜 저 보고 이야기를 해요?

- 장경태 위원 쳐다도 못 봐요, 그러면?
○김승원 위원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장경태 위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박지원 위원 내가 앞에를 봤지 왜 거기를 봐?

(장내 소란)

-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곽규택 위원 정말 예의가 없네.
○김용민 위원 진짜 무례하네.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해 주세요, 양쪽 다.
○곽규택 위원 아니, 지금 저보고 말씀하시니까……
○서영교 위원 거기다 한 게 아니잖아요.
○박지원 위원 여봐요.
○김승원 위원 국회 대선배님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아니, 반말을 하시면서 끼어들지 말라고 하시는…… 그게 말이 됩니까?
○김승원 위원 대선배님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영교 위원 곽규택 위원한테 한 게 아닌데 왜 곽규택 위원이 그래요?
○위원장 정청래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서영교 위원 옆에 유상범 위원한테 한 거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해 주세요!
○박지원 위원 도둑이 제 발 저리네.
○김용민 위원 뭐 피해의식 있어?
○위원장 정청래 양쪽 다 조용히 해 주세요.

토론 종결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지 않은 분이 토론을 종결하자라고 동의가 들어오면 국회법 71조, 108조에 따라 토론 종결 표결을 위원장이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종결을 원하시면 토론을 안 하신 분이 토론 종결합시다 하고 동의 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분 더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경태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들을 만큼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토론 종결도 60조 1항에 따라서……
○장경태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박준태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60조 1항이 원래 먼저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제한 없이 토론을,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김용민 위원 좀 토론부터 들읍시다.
○김승원 위원 여당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유상범 위원 가만있어 봐. 그러니까 기회를 주세요, 다 할 수 있게.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박준태 위원님 토론하려고 하는데 토론 방해하지 마세요.

토론해 주세요.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저는 위법하고 부당한 대통령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청문회 자체가 위법성 논란이 있는데 증인을 추가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 의견을 전합니다.

지난달 18일에 우리 법사위에 가장 먼저 회부된 청원이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5범이 주도한 대통령 탄핵 청원은 온갖 억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민생을 다짐했는데 민생 법안 심사는 안중에도 없고 탄핵 청문회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 계신 야당 위원님들께 이 청문회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예비 활동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탄핵이 목적이라면 굳이 우리가 시간을 써 가면서 이런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탄핵소추안 발의하시면 됩니다.

국정 파트너이자 국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 야당이 국리민복을 멀리하고 정쟁적 어젠다로 국정과 대통령 망신 주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청문회 안건에 대해서도, 청문회 안건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탄핵 사유는 재임 중에 일어나야 하고 중대한 위헌적, 위법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청원에 언급된 내용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해양에 투기했다고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말 난센스 아닙니까?

우리 국회가 청원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선례집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 국민동의 청원 100% 다 폐기되어 왔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처음 도입된 게 2020년 1월입니다. 그때부터 20대, 21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동의 청원이 총 117건입니다. 모두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10만 명 이상의 국민동의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10만 명이 넘으면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 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는지 정확히 확인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청문회를 개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2020년 3월에 우리 국회 법사위에 부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의 경우에 당시 본회의 부의를 논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런 여야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했던 사례입니다. 이것은 여야 간 정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을 뿐 아니라 국회규칙과 청원법에 따른 판단도 전제가 됐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사위에서 국회법대로 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법 당연히 존중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내일 제현절입니다. 우리가 제현국회와 헌정사에 남아 있는 선대들의 정신을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민통합 그리고 협의, 협치, 합의 정신을 강조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법사위 모습에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법권자들의 행동 양식을 모두 법률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법 조항이 수백 조, 수천 조가 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상식에 기반한 국회의 전통과

관례가 중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모두 무시하고 기준 질서를 파괴하는 국회 운영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마쳤습니까?

○박준태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정당의 뜻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이 많아지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만 반영되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여망이 담긴 법안이 아닌 정파적인 법안들로 성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법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되돌아간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마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승원 위원 찬성합니다.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이제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김승원 위원 찬성합니다.

○송석준 위원 토론 기회 좀 주시지요.

○장경태 위원 아니,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소통관 가서 하시면 되지 왜 법사위에서 회의 진행을 이렇게 방해받아야 됩니까?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유상범 위원 법사위 회의 진행을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대체토론……

○김승원 위원 토론 종결 찬성합니다.

○송석준 위원 대체토론 시간인데……

○장경태 위원 소통관 가서 하십시오, 일방적인 정파적 발언은.

○송석준 위원 장 위원님!

○박은정 위원 중인 얘기를 하세요, 중인 얘기를.

○송석준 위원 정파적 발언이라니요, 대체토론이 정파적 발언이라니.

○장경태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중인 토론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건.

○박은정 위원 중인에 관한 토론을 하십시오, 중인에 관한 토론.

○위원장 정청래 국회법에 따라서……

자, 이제 조용히 하세요.

토론 종결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접 동의를 할 수 있고요. 또 토론에 참가하지 않은 분 어떤 위원이라도 토론 종결 동의 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토론 안 하셨지요?

○장경태 위원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충분한 토론은 이루어졌다고 보고 동어 반복

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그건 동어 반복이 아니고……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이거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유상범 위원** 위법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위원장님은 국회법을 오독하고 있어요!

○**송석준 위원** 아주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대체토론을 적당히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청래** 표결에 앞서서……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위원장 정청래**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60조 1항이 위원회에 우선 적용되는 법이에요.

(장내 소란)

계속 이런 식으로 위법한 표결하려면 뭐 하러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또요? 계속 이럴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유상범 위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계속?

○**송석준 위원** 이렇게 독재 입법 폭주 계속하실 겁니까?

○**위원장 정청래** 내려 주세요.

○**장경태 위원** 대통령한테 따지세요, 대통령.

○**김승원 위원** 안건과 관련된 토론을 하셔야지요, 안건과 관련된.

○**위원장 정청래**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독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따지세요! 윤석열 대통령!

(장내 소란)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정청래**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없습니까?

○**박은정 위원** 140만 명 국민들을 폄훼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토론 종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명이 추가로 증인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19일, 26일 국회에 출석해야 될 증인·참고인 명단을 제가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일 채 해병 관련 채택된 증인 명단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형래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박경훈 국방부조사본부장대행,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박상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분은 19일, 26일 이틀간 같이 나오게 되십니다.

그다음 26일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 증인 명단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대통령 부인, 최은순 대통령 장모, 송윤상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회계책임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민태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 이동훈 신한투자증권 직원, 김기현 전 증권사 직원, 이정필 서울구치소 수감 중, 최재영 목사,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최정묵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유경옥 대통령실 행정관, 정지원 대통령실 행정관, 조연경 대통령실 행정관, 송현숙 국가보훈부 사무관.

그다음 참고인입니다.

김정민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김경호 변호사, 구용희 CBS 논설위원,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장인수 전 MBC 기자, 송원근 경찰.

오늘 추가된 여섯 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직무대행, 이원석 검찰총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정정하겠습니다.

김형래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라고 제가 불렀는데 전(前)이랍니다.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김형래, 이렇게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국회증감법 제12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증인 명단

증인(6인)

성명	직업	사유	출석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2024. 7. 26.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2024. 7. 26.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직무대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 당사자를 변호한 핵심 관계자	2024. 7. 26.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2024. 7. 26.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건희 여사 사무 보좌 여부 관련	2024. 7. 26.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2024. 7. 26.

○출석 위원(17인)

곽규택 김승원 김용민 박군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첨가 위원(1인)

장동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한석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